

생산 및 물가 동향

◆ 2015년 11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2.0% 증가(전월대비 0.5% 감소)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27.1%), 식료품(5.5%) 등에서 증가하였고 기계장비(-9.0%), 기타운송장비(-15.5%)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0.4% 감소(전월대비 2.3%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1.3%), 전문·과학·기술(-2.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도소매(3.7%), 금융·보험(7.2%), 부동산·임대(5.3%)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함(전월대비 0.1% 증가).

◆ 2015년 10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5.5%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5.4%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13.9%), 의복,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2.1%), 차량연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3%)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5.5% 증가함(전월대비 1.1%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류(특수산업용기계)를 중심으로 투자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5.4% 감소함(전월대비 6.0%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 실적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5.7%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주택, 사무실·점포 및 도로·교량 등에서 수주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104.0% 증가함.

◆ 2015년 10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함.

◆ 2015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3% 상승(생활물가지수 0.6% 상승)

- 2015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21(2010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함(전월대비 0.3% 증가).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주류·담배(50.3%), 음식·숙박(2.8%), 교육(1.8%), 식료품·비주류음료(1.9%)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5.1)과 주택·수도·전기·연료(-0.1%) 등에서는 하락함.
 - 2015년 12월 생활물가지수는 107.74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함(전월대비 0.6% 상승).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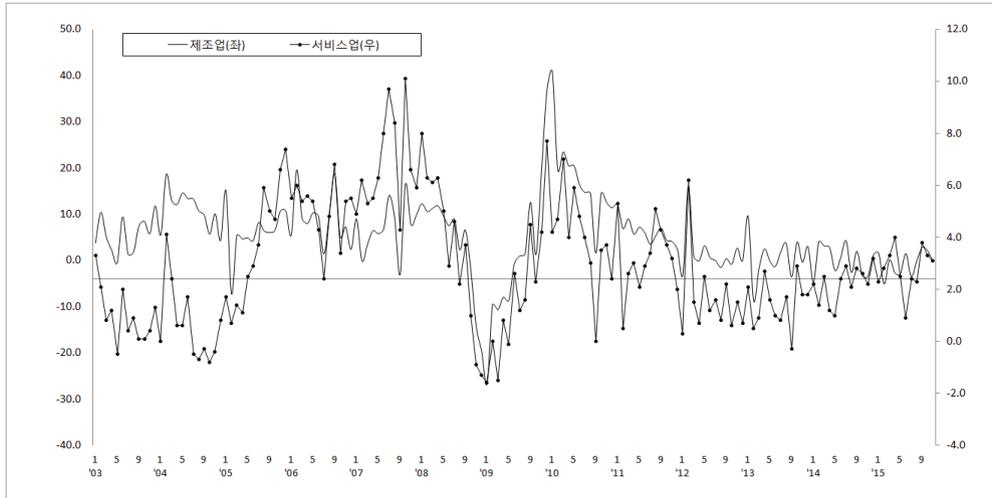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1월	1/4	2/4	3/4	11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1.7	-0.7	0.0	-2.0	0.0	-3.5	-0.9	-1.5	-0.2	-0.3(-2.1)
	제조업 생산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1.8	-0.8	0.0	-2.2	-0.1	-3.5	-1.0	-1.4	-0.4	-0.4(-2.3)
	출하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2.3	-1.0	-0.2	-1.3	-0.2	-1.9	-0.7	-1.3	0.8	-1.0(-2.2)
	내수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2.8	-1.2	-0.4	-2.6	0.2	-3.0	-0.7	-0.1	1.0	1.2(-3.8)
	수출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1.7	-0.6	0.1	0.3	-0.6	-0.4	-0.6	-2.5	0.5	-3.4(-3.4)
	서비스업 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8	1.7	0.7	2.7	2.2	2.2	2.8	2.5	2.8	3.1(0.1)
소비	소비재 판매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0.2	1.1	0.7	1.9	1.6	1.0	1.6	2.9	3.2	5.5(-1.1)
투자	설비투자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15.4	-10.0	-4.7	5.1	4.6	10.4	8.4	5.2	10.0	-5.4(-6.0)
물가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1	1.6	1.4	1.0	1.3	1.3	0.6	0.5	0.7	1.3(0.3)

주: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가스업(D)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5년 12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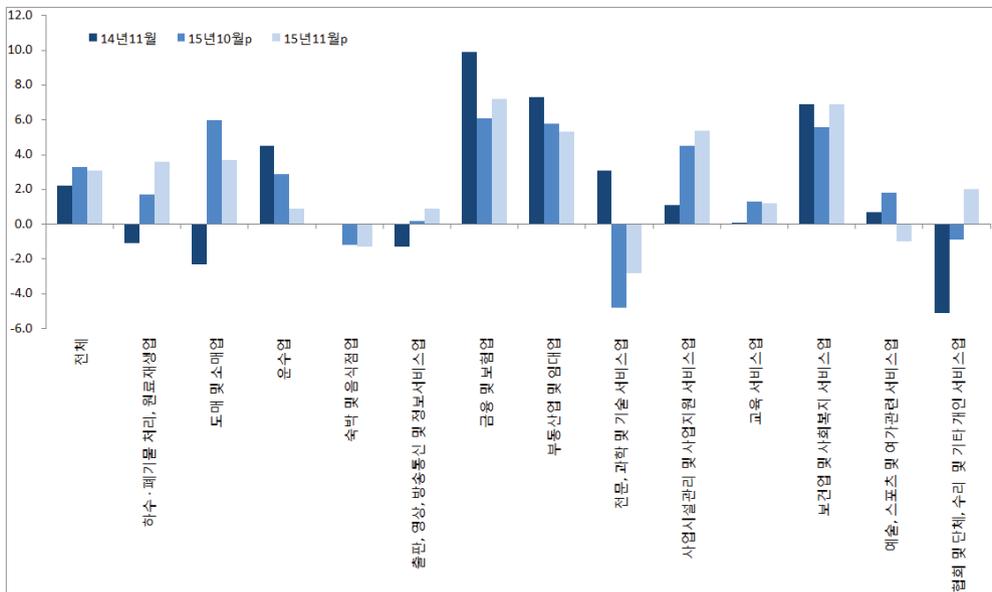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2015년 10월, 11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5. 12), 『2015년 11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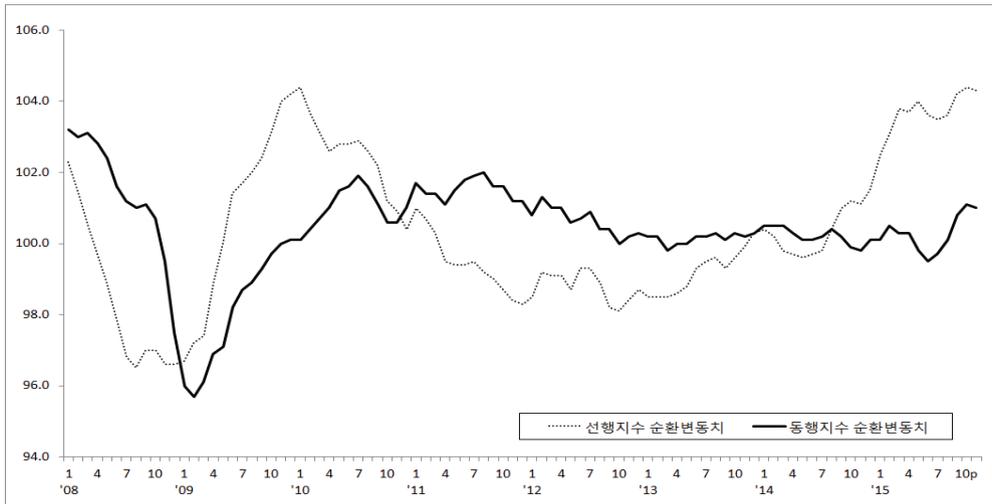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증가세 둔화

- 2015년 경제활동인구는 26,913천 명으로 전년대비 377천 명(1.4%)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543천 명으로 156천 명(1.0%) 증가하였고, 여성은 11,370천 명으로 221천 명(2.0%) 증가하였음.
- 2015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2.6%로 전년대비 0.2%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8%)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여성(51.8%)은 전년대비 0.5%p 상승하였음(그림 4 참조).
- 2015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5천 명으로 전년대비 128천 명(0.8%)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519천 명으로 전년대비 110천 명(2.0%)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586천 명으로 전년대비 18천 명(0.2%)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64천 명으로 전년대비 70천 명 증가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2015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경제활동인구	25,099 (1.4)	25,501 (1.6)	25,873 (1.5)	26,536 (2.6)	26,622 (2.1)	26,270 (2.1)	26,913 (1.4)	26,989 (1.4)	26,747 (1.8)
참가율	61.1	61.3	61.5	62.4	62.4	61.5	62.6	62.5	61.9
취업자	24,244 (1.7)	24,681 (1.8)	25,066 (1.6)	25,599 (2.1)	25,767 (1.7)	25,384 (1.7)	25,936 (1.3)	26,143 (1.5)	25,879 (2.0)
고용률	59.1	59.4	59.5	60.2	60.4	59.4	60.3	60.5	59.9
실업자	855	820	807	937	854	886	976	845	868
실업률	3.4	3.2	3.1	3.5	3.2	3.4	3.6	3.1	3.2
비경제활동인구	15,953 (0.7)	16,081 (0.8)	16,223 (0.9)	15,977 (-1.5)	16,066 (-0.6)	16,458 (-0.5)	16,105 (0.8)	16,194 (0.8)	16,469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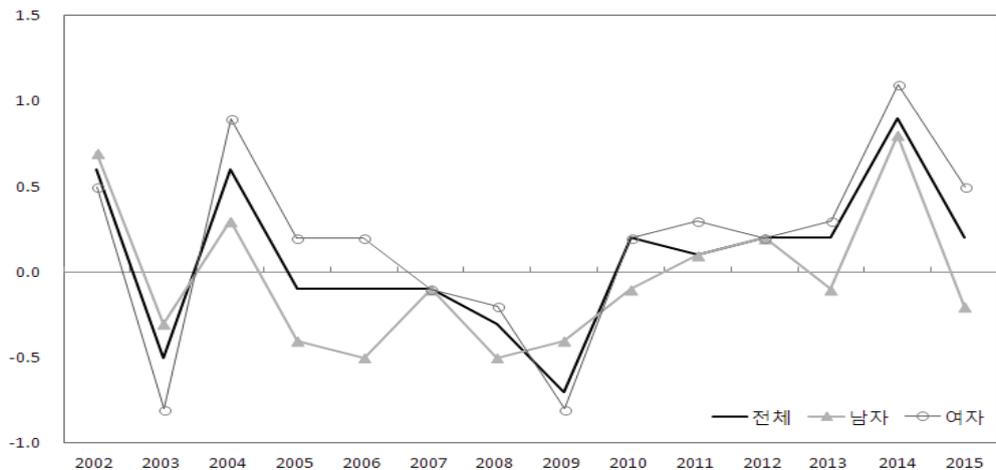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2016. 01), 『2015년 12월 고용동향』.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589천 명으로 전년대비 141천 명(9.7%)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 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092천 명으로 146천 명(-3.4%) 감소하였음.

○ 2015년 취업자는 25,936천 명으로 전년대비 337천 명(1.3%) 증가함.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 추이

(단위: %p,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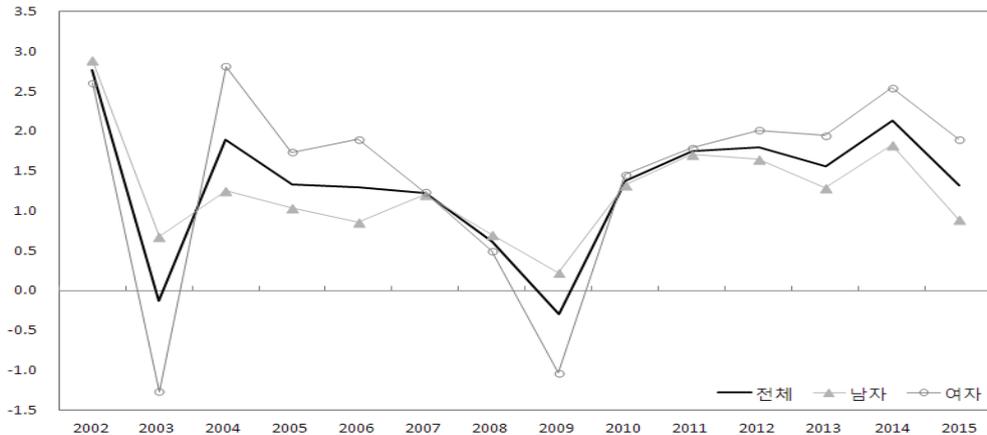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971천 명으로 전년대비 132천 명(0.9%)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965천 명으로 전년대비 204천 명(1.9%)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2015년 고용률은 60.3%로 전년대비 0.1%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1%로 전년대비 0.3%p 하락, 여성의 고용률은 49.9%로 전년대비 0.4%p 상승하였음.
- 2015년 실업자는 976천 명으로 전년대비 39천 명(4.2%) 증가, 실업률은 3.6%로 전년대비 0.1%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572천 명으로 전년대비 24천 명(4.4%)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405천 명으로 전년대비 16천 명(4.1%)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7%로 전년대비 0.1%p 상승, 여성은 3.6%로 전년대비 0.1%p 상승함.

◆ 15~29세, 50대 이상에서 취업자 증가

- 2015년 연령별 취업자는 15~29세(68천 명, 1.8%), 50~59세(149천 명, 2.5%), 60세 이상(172천 명, 4.9%)에서 증가한 반면, 30~39세(-38천 명, -0.7%), 40~49세(-14천 명, -0.2%)에서 감소함.
 - 교육정도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고졸(148천 명, 1.5%), 대졸 이상(347천 명, 3.2%)에서 증가하였고, 중졸 이하(-157천 명, -3.5%)에서 감소하였음.

〈표 3〉 연령별·교육수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2015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전 체	24,244 (1.7)	24,681 (1.8)	25,066 (1.6)	25,599 (2.1)	25,767 (1.7)	25,384 (1.7)	25,936 (1.3)	26,143 (1.5)	25,879 (2.0)
15~29세	3,879 (-0.9)	3,843 (-0.9)	3,793 (-1.3)	3,870 (2.0)	3,855 (1.5)	3,849 (1.1)	3,938 (1.8)	3,955 (2.6)	3,959 (2.9)
30~39세	5,786 (-0.8)	5,756 (-0.5)	5,735 (-0.4)	5,714 (-0.4)	5,722 (-0.5)	5,713 (-0.5)	5,676 (-0.7)	5,686 (-0.6)	5,702 (-0.2)
40~49세	6,611 (0.9)	6,622 (0.2)	6,644 (0.3)	6,682 (0.6)	6,700 (0.1)	6,671 (0.0)	6,668 (-0.2)	6,707 (0.1)	6,662 (-0.1)
50~59세	5,083 (6.1)	5,353 (5.3)	5,606 (4.7)	5,845 (4.3)	5,926 (3.3)	5,886 (3.7)	5,994 (2.5)	6,061 (2.3)	6,028 (2.4)
60세 이상	2,886 (5.4)	3,108 (7.7)	3,289 (5.8)	3,489 (6.1)	3,565 (6.0)	3,265 (6.5)	3,661 (4.9)	3,735 (4.8)	3,528 (8.1)
중졸 이하	4,896 (-0.8)	4,834 (-1.3)	4,672 (-3.4)	4,490 (-3.9)	4,472 (-3.5)	4,172 (-2.9)	4,333 (-3.5)	4,304 (-3.8)	4,094 (-1.9)
고졸	9,645 (0.3)	9,727 (0.9)	9,836 (1.1)	10,105 (2.7)	10,229 (3.0)	10,187 (2.6)	10,253 (1.5)	10,334 (1.0)	10,265 (0.8)
대졸 이상	9,704 (4.6)	10,120 (4.3)	10,559 (4.3)	11,004 (4.2)	11,067 (2.7)	11,025 (2.6)	11,351 (3.2)	11,505 (4.0)	11,520 (4.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6. 01), 『2015년 12월 고용동향』.

◆ 상용직 임금근로자 증가세 지속

- 2015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19,23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7천 명(2.6%)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6,70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1천 명(-2.2%)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588천 명으로 432천 명(3.6%), 임시근로자는 5,086천 명으로 54천 명(1.1%) 증가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556천 명으로 1천 명(0.1%) 증가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고용주 포함)는 5,563천 명으로 89천 명(-1.6%), 무급가족종사자는 1,144천 명으로 61천 명(-5.1%) 감소하였음.
- 2015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998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9천 명(0.7%) 증가,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535천 명으로 전년대비 315천 명(1.5%) 증가하였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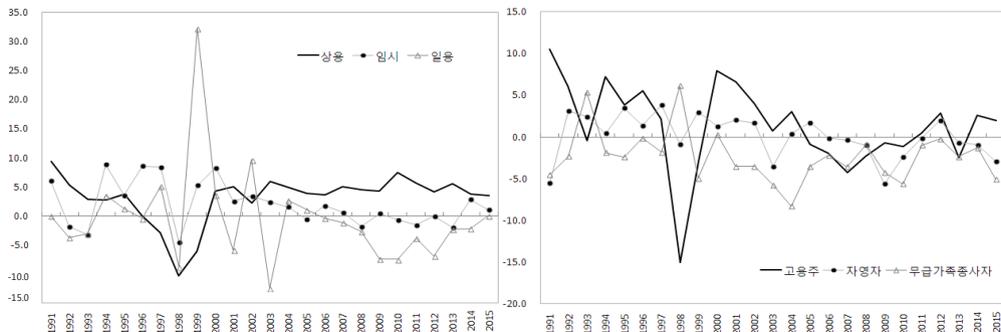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2015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전 체	24,244 (1.7)	24,681 (1.8)	25,066 (1.6)	25,599 (2.1)	25,767 (1.7)	25,384 (1.7)	25,936 (1.3)	26,143 (1.5)	25,879 (2.0)
비임금근로자	6,847 (-0.2)	6,969 (1.8)	6,872 (-1.4)	6,857 (-0.2)	6,799 (-0.8)	6,506 (-0.6)	6,706 (-2.2)	6,610 (-2.8)	6,392 (-1.8)
자영업자	5,594 (0.0)	5,718 (2.2)	5,651 (-1.2)	5,652 (0.0)	5,625 (0.1)	5,468 (-0.1)	5,563 (-1.6)	5,490 (-2.4)	5,374 (-1.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05 (0.4)	1,549 (2.9)	1,510 (-2.5)	1,550 (2.6)	1,574 (5.5)	1,559 (5.3)	1,581 (2.0)	1,549 (-1.6)	1,534 (-1.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88 (-0.1)	4,169 (2.0)	4,141 (-0.7)	4,102 (-0.9)	4,051 (-1.8)	3,909 (-2.1)	3,982 (-2.9)	3,941 (-2.7)	3,840 (-1.8)
무급가족종사자	1,254 (-1.0)	1,251 (-0.2)	1,221 (-2.4)	1,205 (-1.3)	1,175 (-4.9)	1,038 (-3.3)	1,144 (-5.1)	1,121 (-4.6)	1,018 (-1.9)
임금근로자	17,397 (2.5)	17,712 (1.8)	18,195 (2.7)	18,743 (3.0)	18,968 (2.6)	18,878 (2.5)	19,230 (2.6)	19,533 (3.0)	19,487 (3.2)
상용근로자	10,661 (5.7)	11,097 (4.1)	11,713 (5.5)	12,156 (3.8)	12,280 (3.0)	12,310 (3.1)	12,588 (3.6)	12,817 (4.4)	12,858 (4.5)
임시근로자	4,990 (-1.5)	4,988 (-0.0)	4,892 (-1.9)	5,032 (2.9)	5,076 (2.9)	5,001 (2.7)	5,086 (1.1)	5,205 (2.5)	5,114 (2.3)
일용근로자	1,746 (-3.9)	1,627 (-6.9)	1,590 (-2.3)	1,555 (-2.2)	1,612 (-1.2)	1,567 (-2.4)	1,556 (0.1)	1,511 (-6.3)	1,515 (-3.3)
36시간 미만	4,534 (25.4)	3,634 (-19.8)	4,715 (29.7)	3,969 (-15.8)	3,659 (7.8)	3,840 (9.3)	3,998 (0.7)	3,795 (3.7)	3,873 (0.9)
36시간 이상	19,290 (-2.8)	20,637 (7.0)	19,940 (-3.4)	21,220 (6.4)	21,779 (0.7)	21,202 (0.4)	21,535 (1.5)	22,034 (1.2)	21,679 (2.2)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6. 01), 『2015년 12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제조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

○ 2015년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56천 명, 3.6%), 건설업(27천 명, 1.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73천 명, 1.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65천 명, 1.8%), 전기·운수·통신·금융업(22천 명, 0.7%)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07천 명, -7.4%)에서는 감소함.

〈표 5〉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2015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전 산업	24,244 (1.7)	24,681 (1.8)	25,066 (1.6)	25,599 (2.1)	25,767 (1.7)	25,384 (1.7)	25,936 (1.3)	26,143 (1.5)	25,879 (2.0)
농림어업	1,542 (-1.5)	1,528 (-0.9)	1,520 (-0.5)	1,452 (-4.5)	1,395 (-7.2)	1,072 (-8.1)	1,345 (-7.4)	1,289 (-7.6)	1,046 (-2.4)
제조업	4,091 (1.6)	4,105 (0.3)	4,184 (1.9)	4,330 (3.5)	4,374 (3.0)	4,406 (3.3)	4,486 (3.6)	4,550 (4.0)	4,552 (3.3)
전기·가스·증기·수도	76 (-2.6)	76 (0.0)	90 (18.4)	83 (-7.8)	88 (0.0)	89 (7.2)	93 (12.0)	97 (10.2)	97 (9.0)
하수, 원료재생·복원	71 (9.2)	73 (2.8)	73 (0.0)	87 (19.2)	89 (12.7)	87 (8.8)	88 (1.1)	86 (-3.4)	87 (0.0)
건설업	1,751 (-0.1)	1,773 (1.3)	1,754 (-1.1)	1,796 (2.4)	1,854 (4.0)	1,838 (4.7)	1,823 (1.5)	1,835 (-1.0)	1,845 (0.4)
도매 및 소매업	3,638 (1.6)	3,689 (1.4)	3,660 (-0.8)	3,792 (3.6)	3,848 (3.4)	3,865 (3.0)	3,783 (-0.2)	3,746 (-2.7)	3,779 (-2.2)
운수업	1,332 (4.1)	1,380 (3.6)	1,413 (2.4)	1,407 (-0.4)	1,402 (-1.3)	1,410 (-1.4)	1,409 (0.1)	1,411 (0.6)	1,408 (-0.1)
숙박 및 음식점업	1,854 (-1.9)	1,906 (2.8)	1,971 (3.4)	2,098 (6.4)	2,143 (5.7)	2,168 (5.9)	2,179 (3.9)	2,212 (3.2)	2,209 (1.9)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703 (5.2)	700 (-0.4)	692 (-1.1)	714 (3.2)	713 (3.6)	718 (3.3)	772 (8.1)	782 (9.7)	778 (8.4)
금융 및 보험업	846 (4.7)	842 (-0.5)	864 (2.6)	837 (-3.1)	813 (-5.1)	807 (-6.1)	789 (-5.7)	792 (-2.6)	793 (-1.7)
부동산업 및 임대업	486 (-6.0)	486 (0.0)	485 (-0.2)	508 (4.7)	512 (2.4)	501 (0.0)	535 (5.3)	551 (7.6)	552 (10.2)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961 (8.8)	1,028 (7.0)	1,022 (-0.6)	1,025 (0.3)	1,030 (0.8)	1,027 (0.4)	1,048 (2.2)	1,077 (4.6)	1,088 (5.9)
사업서비스	1,086 (6.2)	1,116 (2.8)	1,173 (5.1)	1,180 (0.6)	1,197 (2.5)	1,200 (3.2)	1,249 (5.8)	1,275 (6.5)	1,272 (6.0)
공공행정 등	951 (-0.9)	951 (0.0)	966 (1.6)	957 (-0.9)	923 (-5.1)	869 (-6.0)	936 (-2.2)	966 (4.7)	940 (8.2)
교육 서비스업	1,686 (-6.3)	1,744 (3.4)	1,748 (0.2)	1,807 (3.4)	1,829 (3.6)	1,820 (3.6)	1,818 (0.6)	1,849 (1.1)	1,84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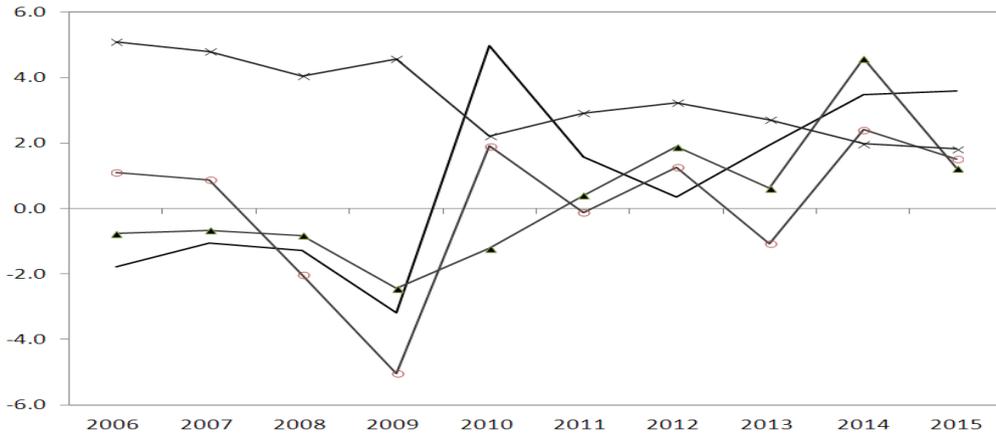
〈표 5〉의 계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2015	
					4/4분기	12월		4/4분기	12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1,311 (13.7)	1,399 (6.7)	1,554 (11.0)	1,693 (8.9)	1,749 (9.6)	1,713 (9.7)	1,770 (4.5)	1,814 (3.7)	1,796 (4.8)
예술·스포츠·여가	417 (9.7)	409 (-1.9)	392 (-4.2)	394 (0.5)	407 (2.5)	405 (1.8)	424 (7.6)	417 (2.5)	399 (-1.5)
협회·단체·수리·기타	1,261 (3.7)	1,286 (2.0)	1,312 (2.0)	1,299 (-1.0)	1,273 (-4.0)	1,260 (-5.3)	1,277 (-1.7)	1,287 (1.1)	1,289 (2.3)
가구내 및 자가	153 (2.0)	166 (8.5)	172 (3.6)	116 (-32.6)	103 (-34.4)	100 (-32.9)	82 (-29.3)	73 (-29.1)	73 (-27.0)
국제 및 외국기관	13 (0.0)	9 (-30.8)	7 (-22.2)	14 (100.0)	17 (88.9)	17 (88.9)	18 (28.6)	19 (11.8)	19 (11.8)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통계청(2016. 01), 『2015년 12월 고용동향』.

〔그림 7〕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대비)



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 KOSIS.

(조문경, 동향분석팀 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5년 10월 명목임금상승률 소폭 상승(전년동월대비 0.6% 상승)

- 2015년 10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한 3,147천 원임.
 - 2015년 10월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7% 상승에 불과한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은 3.8%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3,331천 원)은 특별급여(-19.5%)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여의 증가(3.5%)로 인해 소폭 상승함.
 - 특히 특별급여의 감소폭이 컸던 데는 2015년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타결금(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등)이 전년에는 10월에 상당수 지급되었으나 2015년에는 10월 이후로 지급시기가 늦어진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한편, 비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한 1,457천 원임.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5년 1~10월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대비 3.1% 상승
 - 2015년 1~10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평균대비 3.1% 상승한 3,265천 원임.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3,450천 원, 2.9%)은 전년동평균대비 0.7%p 상승했으나 정액급여(3.2%)는 전년동평균과 동일함.
 -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4% 상승한 1,419천 원임.
- 2015년 10월 실질임금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
 - 2015년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100.0)은 전년동월대비 0.9% 상승에 그친 반면 명목임금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어 실질임금상승률은 -0.3%임.
 - 2015년 1~10월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대비 1.6%p 상승한 2.5%임. 동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6% 상승에 그친 반면 명목임금 상승폭이 확대된 데 기인함.

〈표 6〉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0=100.0)

	2012	2013	2014	2015				
				1~10월 평균	10월	1~10월 평균	10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995 (5.3)	3,111 (3.9)	3,190 (2.5)	3,165 (2.3)	3,129 (4.3)	3,265 (3.1)	3,147 (0.6)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178 (5.3)	3,299 (3.8)	3,378 (2.4)	3,351 (2.2)	3,307 (3.9)	3,331 (0.7)	
	정액급여	2,470 (5.5)	2,578 (4.4)	2,660 (3.2)	2,649 (3.2)	2,652 (2.9)	2,732 (3.2)	2,746 (3.5)
	초과급여	181 (1.0)	184 (1.7)	201 (9.3)	200 (9.0)	213 (6.6)	217 (8.2)	229 (7.4)
	특별급여	527 (5.8)	537 (1.8)	516 (-3.7)	503 (-4.6)	441 (8.3)	501 (-0.3)	355 (-19.5)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93 (6.4)	1,377 (6.5)	1,387 (0.7)	1,386 (0.3)	1,403 (-1.2)	1,419 (2.4)	1,457 (3.8)	
소비자물가지수	106.3 (2.2)	107.8 (1.2)	109.0 (1.3)	109.1 (1.4)	109.1 (1.2)	109.8 (0.6)	110.1 (0.9)	
실질임금증가율	3.1	2.5	1.3	0.9	3.1	2.5	-0.3	

-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 2) 1~10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 4) 9차 산업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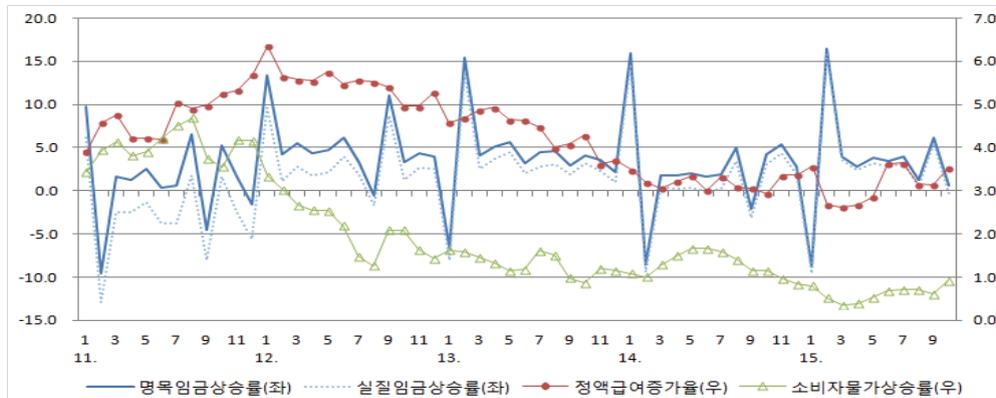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 2015년 11월 협약임금 인상률 4.0%

○ 2015년 11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0%로 2014년 11월 인상률(4.2%)보다 0.2%p 하락함.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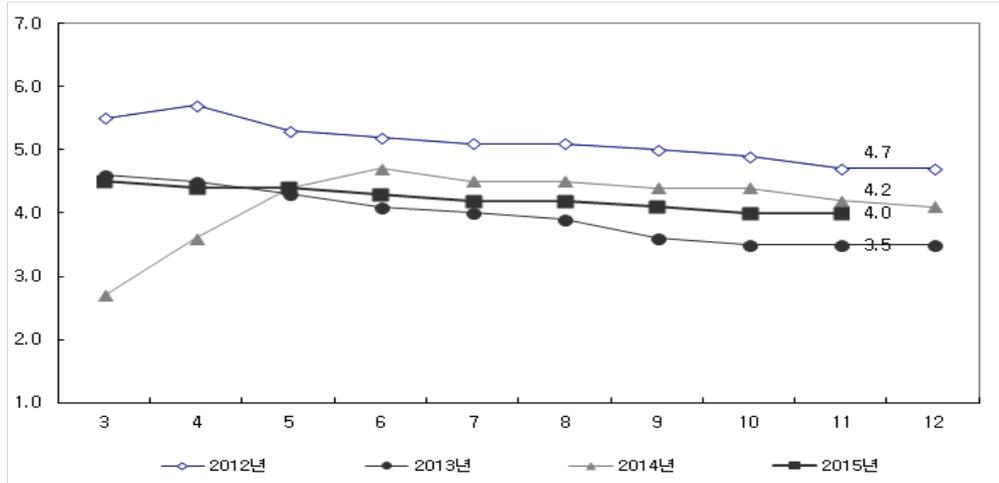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1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73.6%로 전년동월(79.7%)보다 더딤.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5년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몇몇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5년 10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광업(11.2%)으로 나타남.

— 2015년 10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6%), 협회·단체 및 기타 서비스업(-0.8%), 도매 및 소매업(-0.4%) 부문만 임금이 하락함.

— 이외 모든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특히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광업이며, 그 다음으로 여가관련서비스업(6.9%), 부동산업 및 임대업(4.9%),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2.7%) 등으로 임금상승률이 높음.

— 2015년 10월 현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4,900천 원)인 반면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음식숙박업(1,853천 원)으로 나타남.

○ 2015년 1~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 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증가함.

— 2015년 1~10월 평균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7.1%, 2,466천 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운수업(5.5%, 2,923천 원), 금융 및 보험업(5.4%, 5,444천 원) 순으로 임금상승률이 높았음.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10월		1~10월	
			평균	10월	평균	10월
전 산업	3,111 (3.9)	3,190 (2.5)	3,165 (2.3)	3,129 (4.3)	3,265 (3.1)	3,147 (0.6)
광업	3,557 (2.5)	3,480 (-2.1)	3,472 (-3.0)	3,124 (-2.0)	3,669 (5.7)	3,476 (11.2)
제조업	3,371 (4.7)	3,506 (4.0)	3,473 (3.8)	3,428 (5.2)	3,565 (2.7)	3,432 (0.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542 (2.9)	5,554 (0.2)	5,404 (1.6)	4,600 (1.5)	5,693 (5.3)	4,702 (2.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743 (3.3)	2,812 (2.5)	2,788 (2.8)	2,775 (3.7)	2,905 (4.2)	2,850 (2.7)
건설업	2,414 (6.2)	2,497 (3.4)	2,484 (3.0)	2,499 (7.5)	2,580 (3.9)	2,538 (1.5)
도매 및 소매업	3,168 (1.5)	3,206 (1.2)	3,176 (1.2)	3,216 (6.1)	3,240 (2.0)	3,203 (-0.4)
운수업	2,732 (5.5)	2,805 (2.7)	2,770 (1.9)	2,885 (3.3)	2,923 (5.5)	2,943 (2.0)
숙박 및 음식점업	1,772 (1.9)	1,785 (0.7)	1,772 (0.6)	1,805 (1.7)	1,816 (2.5)	1,853 (2.7)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36 (2.2)	3,905 (-0.8)	3,888 (-1.2)	3,822 (3.0)	3,983 (2.4)	3,904 (2.1)
금융 및 보험업	5,058 (1.4)	5,234 (3.5)	5,166 (2.4)	4,824 (3.7)	5,444 (5.4)	4,900 (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2,269 (3.4)	2,323 (2.3)	2,302 (2.3)	2,309 (0.4)	2,466 (7.1)	2,423 (4.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243 (3.2)	4,419 (4.2)	4,367 (4.3)	4,507 (9.1)	4,449 (1.9)	4,345 (-3.6)
사업서비스업	1,883 (5.2)	1,924 (2.2)	1,907 (1.9)	1,936 (4.3)	1,982 (3.9)	1,963 (1.4)
교육서비스업	3,261 (4.4)	3,375 (3.5)	3,413 (2.5)	3,152 (3.6)	3,532 (3.5)	3,165 (0.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62 (2.0)	2,700 (1.4)	2,674 (0.2)	2,679 (0.7)	2,758 (3.2)	2,692 (0.5)
여가관련 서비스업	2,326 (5.2)	2,398 (3.1)	2,370 (2.9)	2,250 (1.3)	2,456 (3.6)	2,406 (6.9)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226 (-0.1)	2,249 (1.0)	2,230 (0.4)	2,284 (6.2)	2,297 (3.0)	2,265 (-0.8)

-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 2) 1~10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반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9%, 4,449천 원), 도매 및 소매업(2.0%, 3,240천 원),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2.4%, 3,983천 원), 제조업(2.7%, 3,565천 원) 등 일부 산업은 전 산업 평균 임금상승률(3.1%)을 밑도는 1~2%대 상승률을 보임.
- 2015년 1~10월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693천 원)이며, 반대로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음식숙박업(1,816천 원)으로 나타남.

◆ 2015년 10월 중소기업에서만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증가

- 2015년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1.5% 상승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는 3.6% 하락함.

- 2015년 10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을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상승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는 3.4% 하락함.
 - 2015년 10월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한 것은 특별급여의 감소폭이 컸던데다 정액급여의 증가폭이 둔화된 데 기인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3	2014	2015			
				1~10월 평균		1~10월 평균	
				10월	10월	10월	10월
전 규모 (5인 이상)	전 체	3,111 (3.9)	3,190 (2.5)	3,165 (2.3)	3,129 (4.3)	3,265 (3.1)	3,147 (0.6)
	상용임금총액	3,299 (3.8)	3,378 (2.4)	3,351 (2.2)	3,307 (3.9)	3,450 (2.9)	3,331 (0.7)
	정액급여	2,578 (4.4)	2,660 (3.2)	2,649 (3.2)	2,652 (2.9)	2,732 (3.2)	2,746 (3.5)
	초과급여	184 (1.7)	201 (9.3)	200 (9.0)	213 (6.6)	217 (8.2)	229 (7.4)
	특별급여	537 (1.8)	516 (-3.7)	503 (-4.6)	441 (8.3)	501 (-0.3)	355 (-19.5)
	비상용임금총액	1,377 (6.5)	1,387 (0.7)	1,386 (0.3)	1,403 (-1.2)	1,419 (2.4)	1,457 (3.8)
5~299인	소 계	2,764 (3.8)	2,836 (2.6)	2,811 (2.2)	2,778 (3.9)	2,911 (3.6)	2,819 (1.5)
	상용임금총액	2,938 (3.7)	3,008 (2.4)	2,982 (2.2)	2,935 (3.4)	3,080 (3.3)	2,981 (1.6)
	정액급여	2,433 (4.3)	2,504 (2.9)	2,493 (2.8)	2,501 (2.8)	2,566 (2.9)	2,572 (2.8)
	초과급여	160 (3.0)	172 (7.5)	172 (6.9)	181 (5.3)	183 (6.8)	193 (6.7)
	특별급여	345 (-0.3)	332 (-3.6)	317 (-5.1)	253 (8.9)	331 (4.4)	216 (-14.5)
	비상용임금총액	1,392 (7.0)	1,390 (-0.1)	1,388 (-0.6)	1,411 (-2.5)	1,425 (2.7)	1,480 (4.9)
300인 이상	소 계	4,447 (3.7)	4,678 (5.2)	4,637 (4.9)	4,684 (10.3)	4,793 (3.3)	4,514 (-3.6)
	상용임금총액	4,583 (3.6)	4,827 (5.3)	4,781 (5.0)	4,864 (10.5)	4,950 (3.6)	4,699 (-3.4)
	정액급여	3,093 (4.3)	3,272 (5.8)	3,249 (5.6)	3,284 (6.7)	3,407 (4.9)	3,428 (4.4)
	초과급여	270 (-1.6)	316 (16.9)	311 (16.9)	348 (16.4)	352 (13.2)	370 (6.3)
	특별급여	1,220 (3.0)	1,239 (1.5)	1,221 (0.6)	1,232 (20.2)	1,191 (-2.4)	901 (-26.8)
	비상용임금총액	1,219 (0.8)	1,354 (11.1)	1,363 (11.5)	1,330 (14.0)	1,357 (-0.4)	1,263 (-5.1)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10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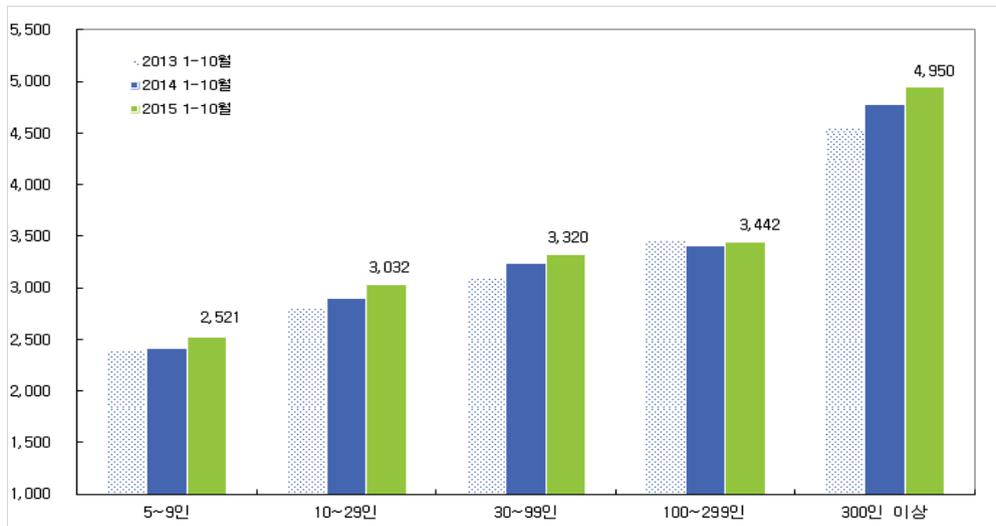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0월 비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대규모 사업체에서만 감소함.
 -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5.1% 감소한 1,263천 원인 반면 중소기업 사업체에서는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한 1,480천 원으로 나타남.
- 2015년 1~10월 평균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상승함.

-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3,080천 원)은 전년동평균대비 3.3% 상승함으로써 임금상승폭이 확대됨. 이는 특별급여 증가에 기인함.
-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4,950천 원)은 전년동평균대비 3.6% 상승함으로써 증가폭이 둔화함. 이는 정액급여의 증가율이 둔화된 데 기인함.

[그림 10]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1~10월 평균 임금총액(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주: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장기적으로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의 흐름으로 보면, 중소기업체는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사업체는 증가율이 확대되는 추세임. 그러나 최근 몇 개월 동안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율의 둔화가 이어지고 있음.
- 사업체 규모별로 비상용근로자의 1~10월 월평균 임금총액을 보면, 중소기업체의 비상용근로자는 전년동평균대비 2.7% 상승한 1,425천 원인 반면, 대규모 사업체 비상용근로자는 0.4% 하락한 1,357천 원임.

◆ 2015년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50% 감소한 174.2 시간(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동일)

○ 2015년 10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9시간 감소한 174.2시간임.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180.7시간)과 소정실근로시간(167.3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2%, 0.3% 감소했으며, 초과근로시간(13.4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함.
 - 비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14.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함.
- 2015년 1~10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5% 증가한 171.7시간임.
- 2015년 1~10월 평균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177.5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6% 증가한 반면, 비상용근로자(114.4시간)는 전년동평균대비 2.3% 감소함.

〈표 9〉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3	2014	2015			
			1~10월 평균		10월	
			1~10월 평균	10월	1~10월 평균	10월
전체 근로시간	172.6 (-1.0)	171.4 (-0.7)	170.8 (-0.8)	175.1 (-0.3)	171.7 (0.5)	174.2 (-0.5)
상용 총근로시간	178.1 (-1.0)	177.1 (-0.6)	175.8 (-0.6)	181.1 (-0.3)	177.5 (0.6)	180.7 (-0.2)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5.6 (-1.0)	164.1 (-0.9)	162.9 (-1.0)	167.8 (-0.2)	164.6 (0.7)	167.3 (-0.3)
상용 초과근로시간	12.5 (-2.3)	12.9 (3.2)	12.9 (4.0)	13.3 (-0.7)	12.9 (0.0)	13.4 (0.8)
비상용근로시간	122.5 (0.2)	117 (-4.5)	117.2 (-5.0)	116.9 (-5.7)	114.4 (-2.3)	114.2 (-2.3)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1~10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0월 산업별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몇몇 산업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서 감소
- 여가관련서비스업(1.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0.9%), 부동산업 및 임대업(0.6%), 숙박 및 음식점업(0.0%)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함.
 -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으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함. 다음이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1.9%), 교육서비스업(-1.7%) 등으로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함.
 - 2015년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5.3시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189.0시간)으로 나타남.

〈표 10〉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3	2014	2015			
			1~10월 평균	10월	1~10월 평균	10월
전 산업	172.6 (-1.0)	171.4 (-0.7)	170.8 (-0.8)	175.1 (-0.3)	171.7 (0.5)	174.2 (-0.5)
광업	180.6 (-2.5)	179.4 (-0.7)	178.6 (-0.5)	183.7 (0.8)	178.7 (0.1)	183.8 (0.1)
제조업	185.0 (-0.8)	185.4 (0.2)	184.8 (0.4)	189.7 (0.0)	185.4 (0.3)	189.0 (-0.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3.4 (-1.2)	170.5 (-1.7)	169.5 (-2.1)	172.3 (4.0)	170.1 (0.4)	168.2 (-2.4)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2.0 (-1.5)	177.8 (-2.3)	177.7 (-2.4)	183.5 (-1.6)	177.2 (-0.3)	180.0 (-1.9)
건설업	152.7 (0.1)	148.5 (-2.8)	148.2 (-3.1)	152.5 (-1.6)	146.9 (-0.9)	148.8 (-2.4)
도매 및 소매업	173.4 (-0.6)	172.3 (-0.6)	171.6 (-0.6)	176.2 (0.3)	172.0 (0.2)	174.4 (-1.0)
운수업	177.8 (-2.1)	173.1 (-2.6)	172.5 (-2.7)	175.9 (-1.5)	173.2 (0.4)	175.7 (-0.1)
숙박 및 음식점업	177.3 (-5.0)	175.2 (-1.2)	174.2 (-1.1)	179.1 (-0.3)	174.8 (0.3)	179.1 (0.0)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0 (-0.5)	161.9 (-0.7)	161.7 (-0.5)	164.7 (-0.4)	163.5 (1.1)	166.1 (0.9)
금융 및 보험업	162.7 (-0.4)	163.4 (0.4)	162.9 (0.6)	167.0 (1.0)	163.5 (0.4)	165.4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1.5 (-1.0)	190.1 (-0.7)	189.2 (-1.2)	194.2 (0.4)	191.8 (1.4)	195.3 (0.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9 (-0.8)	163.3 (-0.4)	162.4 (-0.6)	167.1 (-0.2)	163.8 (0.9)	166.1 (-0.6)
사업서비스업	172.3 (-0.5)	171.9 (-0.2)	171.2 (-0.3)	175.0 (-0.1)	172.0 (0.5)	173.8 (-0.7)
교육서비스업	150.6 (-0.3)	152 (0.9)	151.7 (1.2)	152.4 (1.3)	151.3 (-0.3)	149.8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2.0 (-1.6)	169.6 (-1.4)	168.9 (-1.8)	173.3 (-1.1)	170.6 (1.0)	172.1 (-0.7)
여가관련서비스업	158.0 (-0.1)	158.9 (0.6)	158.4 (0.5)	161.5 (-0.9)	160.0 (1.0)	163.6 (1.3)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7.5 (-0.8)	162.9 (-2.7)	162.6 (-3.2)	166.7 (-2.5)	162.8 (0.1)	166.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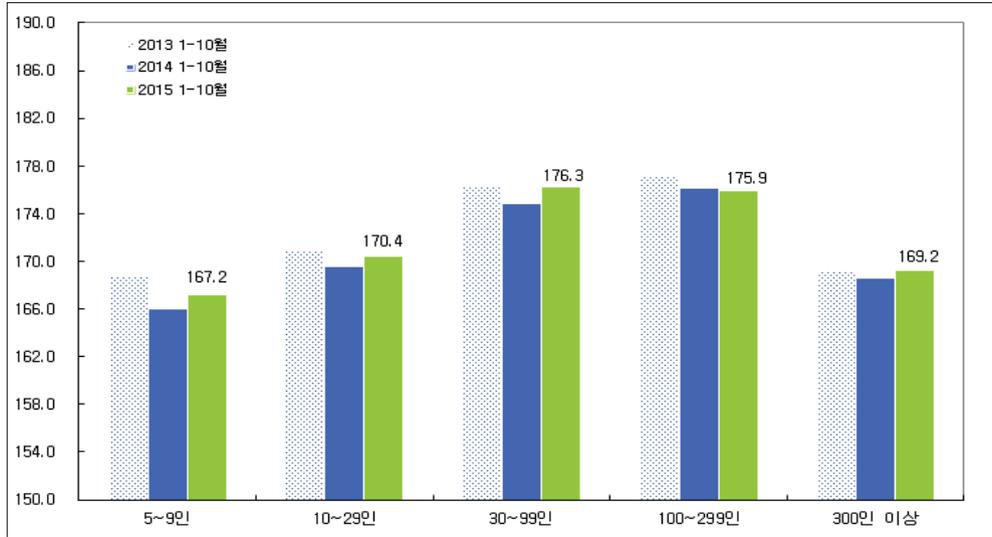
-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 2) 1~10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10월 산업별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증가함.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4%)이었으며, 동시에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191.8시간)으로 나타남. 이 외에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많이 증가한 산업은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 여가관련서비스업(1.0%) 등으로 나타남.
 - 반면, 전년동평균대비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0.9%)이었으며, 동시에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던(146.9시간) 산업으로 나타남.

[그림 11] 사업체규모별 1~10월 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주: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0월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기업 모두 감소함.
 - 중소기업(5~299인)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5.29시간(-0.5%)이며, 대기업(300인 이상)에서의 총근로시간은 170.0시간(-0.6%)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사업체 세부 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을 보면, 5~9인 사업체는 170.4시간(-0.8%), 10~29인 사업체는 173.1시간(-0.4%), 30~99인 사업체는 180.2시간(0.2%), 100~299인 사업체는 177.5시간(-1.1%)으로 나타나 30~99인 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이 유일하게 증가함.
- 2015년 1~10월 평균 사업체 규모별 총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기업 모두 증가함.
 - 중소기업(5~299인)의 1~10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6% 증가한 172.3시간이며,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는 167.2시간(0.7%↑), 10~29인 사업체는 170.4시간(0.5%↑), 30~99인 사업체는 176.3시간(0.5%↑)이었으며, 100~299인 사업체는 전년동평균대비 0.1% 감소한 175.9시간으로 나타남.
 - 대기업(300인 이상)의 1~10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169.2시간(0.4%↑)으로 나타남.

(김복순, 동향분석팀 전문위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12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877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12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886건)보다 9건 낮은 수치임.
- 지난 12월 조정성립률 53.7%
 - 지난 12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5.1%에 비해 1.4% 낮아진 수치임.

〈표 11〉 2014년, 2015년 12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5. 12	877	858	381	148	233	329	51	278	42	106	19	53.7
2014. 12	886	864	401	169	232	327	43	284	45	91	22	55.1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537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386건)보다 151건 높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33.8%(166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66.2%(325건)를 차지함.

〈표 12〉 2014년, 2015년 1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5. 12	537	514	174	0	87	116	137	0	22
2014. 12	386	358	117	7	79	41	114	0	27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고용노동부,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발표

-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1월 22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하고 최종 발표함.
- 공정인사 지침으로는 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② 근로계약 해지 두 파트로 구성됨.
 - ①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력운영 방안
 -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하는 사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력과 스펙보다는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기법을 소개함.
 - 공정한 평가와 급여·승진 등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근로자 능력향상을 위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등 교육훈련 강화, 적재적소 배치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 퇴직 시에는 기업의 전직지원 등이 가급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②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
 - 법과 판례에 있는 징계·정리·통상해고 등의 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한다고 밝힘.
 -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의 통상해고는 새로이 만든 제도가 아님을 분명히 함.
(이번 지침은 많은 판례에서 근로자가 일정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그에 맞는 임금지급을 하는 근로계약 본질에 입각하여 소위 “통상해고”의 인정사례와 기각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이를 요건별로 명확히 함.)
 -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통상해고 대상이 될 수 없음.
(각 사업장에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하여 주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어야 함.)
 - 공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이 필요함.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고 등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 ❖ (평가기준 설계)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업무능력과 근무실적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항목을 세분하여 구체화할 것을 제시
- ❖ (평가방법의 타당성) 계량평가나 절대평가 방식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비계량, 상대평가가 활용될 수 있으나 계량평가·절대평가 방식과 결합하여 상호 보완해야 함
- ❖ (평가의 신뢰성) 평가위원회 등 복수의 평가자를 두거나 여러 평가단계를 두면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 근로자 통보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두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 (평가결과의 합리적 적용) 평가결과가 나쁘더라도 ▲전직 명령 후 1년 이내인 자 ▲노조 전임 등 파견 복귀 후 1년 이내인 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출산 또는 육아 휴직 후 복귀 1년 이내인 자 등 역량발휘가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양대지침발표 보도자료 (01.22)」.

○ 취업규칙 지침으로는 현재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함.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는 규범이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익 변경이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불이익 변경이면 동의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

- 취업규칙 변경내용 중에 이익과 불이익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있는 기존 판례의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되,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의무화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함.

- ❖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아래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 ①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고령자고용촉진법 입법취지를 형해화 할 정도의 낮게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②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 정년 60세 하에서 신규일자리 창출 노력 확보, 인건비 부담과 조화 등을 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노사 모두에게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이 있음
 - ③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근로자 측이 입게 되는 불이익 외에 경과조치 유무, 동종 기업, 사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합리적인 임금 수준, 단계적 감액 등을 고려하여 변경 내용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④ (다른 근로조건 개선 여부) 근로시간 단축, 업무의 조정, 복리후생 제도의 유지·확대 등을 고려해야 함
 - ⑤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등)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의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형식적으로만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반대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측에서 교섭 자체에 무조건 응하지 않거나 합리적 대안 제시도 없이 반대하는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지역·동종 업계 등의 임금감액 비율, 대상 조치, 교섭 및 합의 경향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양대지침발표 보도자료 (01.22)」.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1) 불이익과 이익을 총체적으로 비교하고, 2) 사용자의 개편 필요성 인정 여부, 3) 주변 기업의 도입 여부, 4)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와의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은 70년대부터 일관되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판단하는바, 이는 동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대부분 사업장에서 는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할 것임.

◆ 고용노동부,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최대 규모 직업훈련 지원

- 고용노동부는 2016년에 청년층 등 구직자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구직자(실업자) 직업훈련에 역대 최대규모인 5,371억 원(2015년 4,840억 원보다 약 11% 증가)을 지원 하여, 연간 20만 명의 구직자를 지원할 계획임.
 - 2016년에는 기계가공(금형), 정보통신기술 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 대 폭 확대(15년 1,856억 → 16년 3,741억, 101.6% 증가)되며, 이는 2015년 구직자 직 업훈련 중 기계가공(76.6%), 기계설계(72.8%), 정보기술(69.8%), 통신기술(66.8%) 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분야가 취업률이 높아 이를 반영한 결과임.
 - 반면, 패션(27.9%), 사회복지(32.9%), 공예(33.6%) 직종 등 상대적으로 취업성고가 낮은 내일배움카드 훈련 분야는 축소되어, 2016년도 내일배움카드 훈련 예산도 2015년 2,984억에서 2016년 1,630억으로 감소하였음.

〈표 13〉 취업률 상·하위 5대 직종 현황

(단위: %, 개)

		취업률	15년 과점수	16년 과점수	증감
취업성과 우수직종	기계가공(금형)	76.6	81	168	107%
	법률사무	75.5	18	34	89%
	기계설계	72.8	166	221	33%
	정보기술	69.8	268	396	48%
	통신기술	66.8	69	94	36%
취업성과 저조직종	식음료조리서비스	35.4	1,521	1,071	-30%
	제과제빵	34.1	451	330	-27%
	공예	33.6	236	170	-28%
	사회복지	32.9	275	270	-2%
	패션	27.9	313	266	-15%

주: 취업률 산정은 연간 훈련규모가 1천 명 이상인 직종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16년도 구직자(실업자)직업훈련제도(01.06)」.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기간(뿌리산업) 및 전략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사업
-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훈련 : 구직자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구직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사업

○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위한 직업훈련(10개월~1년) 지원을 2015년 4,200여 명에서 2016년 1만 명 수준으로 확대(138% 증가)하고, 비진학 청년층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직업훈련과정 제공을 통해 훈련의 성과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6년에 청년층 등 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취업성도가 높은 유망한 직종, 우수 훈련과정 중심으로 대폭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년고용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힘.

◆ **여당과 야당, 파견법을 둘러싸고 대립**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월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면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청년과 국민,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함.

- 정부는 현재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으로 짧아 회사들이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 종료’를 택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35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본인 요청 시 4년까지 연장을 허용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임.
- 그리고 정부의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고령자와 근로소득 상위 25% 전문직 등으로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정부는 5대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마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4법이라도 조속히 통과시키고자 하는 모습이지만, 야당은 기간제법과 더불어 파견법도 반대하고 있음.

- 야당은 파견법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불법파견'이 사실상 합법화되어 대기업 제조업체가 앞으로 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고 파견인력을 활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현행 파견법은 비정규직의 증가를 막기 위해 파견사업이 가능한 범위를 32개 업

중, 192개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고, 허용기간은 최대 2년, 계약 갱신횟수는 1회로 사실상 ‘파견’이 엄격히 제한된 상태임.

- 여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파견법 개정안은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파견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파견가능 업종의 범위를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까지 넓히는 내용임.
- 더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14일 반박 성명을 내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고 밝힘.

◆ 노동계, ‘일반해고 가이드북’에 반발

- 노동부는 2015년 12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일반해고 가이드북) 초안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개정안을 발표함.
-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12월 31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무식에서 “정부가 전날 양대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노사정 합의를 파기했으며, 파기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은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다”며 “60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연초에 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에 의해 훼손된 9·15 합의 전면 백지화와 향후 투쟁계획을 공식 논의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함.
- 이 후, 노사정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어 2대 지침의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으나,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입법과 일방적인 2대 지침 발표 등에 반발하며 노사정위 탈퇴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특위에 불참함.
 - 송위섭 특위위원장은 2대 지침 추진과 관련해 “9·15 노사정 대타협에 따라 노·사·정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특히 노동계가 협의 자체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논의 참여를 촉구함.
 -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 관련 2대 지침을 철회하기 전에는 어떠한 대화도 없을 것”이라며 “만약 중집에서 대타협 파기가 선언되면 정부와 대화 단절은 물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협의를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함.

◆ **노동계와 정부,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양대 지침’으로 갈등**

-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함.
 - 그리고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은 스스로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음에도 그 책임을 한국노총에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음.
 -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정 합의 파기선언을 계기로 정부와의 협상기조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맞선 전면적 투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고, 정부가 일반하고·취업규칙 지침을 강행할 경우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심판 청구소송 같은 법률 대응에 나서는 한편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맞설 방침임.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이 입장을 밝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한국노총이 파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 여망을 배반하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 장관은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겠지만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현장 근로자와 다양한 조직·미조직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2대 지침을 확정하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이 후, 정부가 22일 일반하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정부는 ‘공정한 평가, 재교육·배치전환 등 기회 부여, 성과 개선 없을 경우 해고’ 등으로 저성과자 해고 절차를 엄격히 규정해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연공서열 중심의 국내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노동계는 부당해고가 만연한 국내 노동시장 현실에서 해고 요건까지 완화하면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쉬운 해고’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한국노총은 양대 지침에 대한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고, 민주노총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기로 함.

◆ 반올림, 삼성전자와 끝나지 않은 직업병 문제

-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 반올림은 지난달 12일 조정의제 중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최종 합의서에 서명함.
 - 이번 합의에서 삼성전자는 재해예방대책으로 반도체·LCD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를 설립해 확인·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음.
 - 옴부즈맨위원회 위원장은 서울대 이철수 법학과 교수가 맡고, 산업보건과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해 올해부터 3년간 위원회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
 -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오랫동안 끌어왔던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정신을 잘 이행해 나가를 바란다”고 말함.

-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 처음으로 난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반올림 측은 ‘사과’와 ‘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음.
 - 삼성전자는 지난해 진행한 보상과 사과에 이어 이번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해예방대책까지 해결됨에 따라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황상기 반올림 교섭단 대표는 “재발방지는 미래 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방안이고, 사과와 보상은 삼성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어떠한 말도 한 번 못 꺼내 봤다”며 “삼성이 반올림과 대화해서 보상과 사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반올림은 다음 날인 13일 오전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은 재발방지대책 합의내용을 지키고 사과·보상에 대한 교섭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한다고 밝혔으나, 삼성은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힘.
 - 황상기 대표는 “삼성이 말하기를 (직업병 피해자 중) 150명이 보상신청을 했고 130명에게 보상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삼성에서 치료비와 보상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줘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며 “기준이 미묘한 보상안이기 때문에 삼성이 이야기하는 피해보상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피해보상과 치료비 문제, 사과 문제를 매듭지을 때까지 반올림은 이 자리에서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이날 삼성전자는 반올림의 주장에 대해 “보상과 사과가 진행된 데 이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예방 문제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합의를 이뤘다”고 공식입장을 밝힘.

◆ **서울고등법원, 철도민영화 반대파업 노조위원장 무죄**

- 지난달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2013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 반대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및 노조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함.
 - 재판부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그 불법성이 사용자로 하여금 실제 파업 강행을 예측할 수 없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사가 실제로 비상수송 대책을 세웠고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대체인력을 투입했으며 노조가 필수업무를 수행할 조합원 명단을 넘겨 파업으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함.
 - 따라서, 재판부는 노조 파업이 업무방해죄 요건 판례로 굳어진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봤음.
 -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결정하였음.
- 노조는 철도민영화 반대파업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힘.
 - 노조는 성명을 통해 “파업을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우리와 같은 억울한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서울고등법원, 전교조는 범외노조**

-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1일 전교조가 "범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함.
 -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범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힘.
 -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는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노조로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후 전교조의 범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오늘 항소심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

해 왔음.

- 그러나 이날 판결로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됐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됨.
- 판결 직 후, 전교조는 국제기준과 시대정신에 못 미치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힘. **KTL**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